AI기반케어로봇센터 운영규정

□ 제정 : 2021. 2. 26.
□ 개정 : 2022. 1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I기반케어로봇 분야의 연구를 위해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AI기반케어로봇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기반케어로봇 첨단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2. AI기반케어로봇 정부과제 도출 및 과제수행에 관한 업무
3. AI기반케어로봇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
4. AI기반케어로봇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업
5. 지역사회의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 2022. 12. 1.>
6.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 2022. 12. 1.>
7.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 2022. 12. 1.>
8. 지역사회의 주민과 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업무 <신설 : 2022. 12. 1.>
9.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① 센터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구로 소속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I기반케어로봇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및 부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센터장(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7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되,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의 전문연구원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4. 센터의 직원은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환류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일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